

## 상조회 규약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설치 및 명칭) 000 한국학교 교사 상조회(이하 상조회라 칭한다)를 설치한다.

제 2 조 (목적) 상조회는 교사 상호간의 상부 상조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위치) 상조회 사무소는 00 한국학교 캠퍼스 안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 상조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본인 사망 \$ 000
2. 교사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 사망 \$ 00
3. 교사의 회갑, 배우자의 회갑 \$ 00
4. 교사 본인의 결혼, 출산 \$ 00

5. 교사의 퇴직 \$ 00 (1년 이하의 근무 경력의 교사는 상조회비로 지불하지 않고 송별 카드로 대신한다. 상조회 사업 비용은 2년 이상 - 4년 근무경력 교사를 기준으로 \$ 00로 하고 5년 이상 - 10년 \$ 00, 11년 이상은 \$ 000을 상한 액수로 그 이상은 지불하지 않는다.)

6. 그 외 학교가 정하는 사업(교사 자녀의 결혼, 본인의 병가(수술)등) \$00

제 5 조 (관리) 상조회의 재산 및 업무 일체는 학교가 관리한다.

### 제 2 장 회 원

제 6 조 (회원 자격) 상조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교의 교사 이어야 한다.

제 7 조 (자격상실) 상조회 회원은 다음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퇴직(일반, 명예)
2. 사망

### 제 3 장 상 조 회 비

제 8 조 (상조회비) 상조회비는 매 학기 시작에 \$ 00 씩 일률적으로 수납한다.

상조회비 부족 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소정의 액수를 재수납한다.

제 9 조 (경비) 상조회 경비는 상조회비로 충당한다.

### 제 4 장 규 약 개 정

제 10 조 (시행 세칙) 본 규약에 필요한 세칙은 교사 회에서 정한다.

제 11 조 (해산 및 정산) 한 해의 남은 재산은 다음 해로 이월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약은 0000년 00월, 00학기부터 시행한다.